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0가단53177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1/6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18. 3. 23.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9,954,6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954,6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망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1. 17. 체결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8. 3. 27. 접수 제12714호로 마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중

소외 C의 법정상속 지분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1861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7. 10. 'C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2.부터 2007. 6. 29.까지 연 3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40,000,000원에 대하여 2004.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채권', '이 사건 채무'라 한다).

나. 한편 C의 부(父)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1. 17. 사망하였다. C의 누나인 피고는 2018. 3. 23.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상속인 E, F, G, C, H와 사이에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협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 2018. 3. 27.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C가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C에게 빌려준 돈이 20억 여원이 넘어, C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것일 뿐 C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바(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약이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수익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사해행위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위와 같이 일부 취소를 하여야 할 경우 그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바로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6.12. 선고

99다2061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경기광주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망인으로부터 피고에게 상속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2018년경을 기준으로 370,000,000원인 사실, 피고는 망인의 채무 130,272,190원도 상속받아 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원고는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절차는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C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39,954,635원[= 239,727,810원(= 370,000,000원-피고의 망인 채무 변제액 130,272,190원) × 1/6지분]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40,000,000원 중 적은 금액인 39,954,63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39,954,6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명주

[별 지]

부동산의 표시

1. 토 지

서울특별시 중구
대 469㎡

공유자 지분 938분의 132 중 2/13

2. 건 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
위 지상
 동호

연와조 경사 스라브 위 기와 2층

주택

1층 69.96㎡

2층 69.96㎡

지층 125.44㎡

공유자 지분 530.72분의 139.92 중 2/13

